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38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서영교 · 조계원 · 김문수
강득구 · 이용우 · 오세희
김남근 · 임호선 · 김준형
최민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의미상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이 상이한 경우가 있고, 심각한 기본권 침해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안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나 헌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허용하게 하여 기본권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68조 등).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로 한다.

제69조제1항 단서 중 “한다”를 “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중국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제3항제1호 중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을 “심판 청구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제2호 중 “제68조제2항에”를 “제68조제1항에”로, “헌법소원심판에서는”을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사건의”를 “재판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75조제4항 중 “헌법재판소가”를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으로,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을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으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를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을 “헌법재판소가”로,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을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으로,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를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8조

제2항에”를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를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에”를 “제68조제2항에”로,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를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환송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제68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u>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u>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 ----- ----- ----- <u>헌법재판소에</u> ----- ----- ----- ----- <u>있고,</u> <u>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 청구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	제69조(청구기간) ① ----- ----- ----- ----- ----- ----- ----- -----

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u>한</u> <u>다</u>. ② (생 략)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③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72조(사전심사) ① · ② (생 략)	----- <u>-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 법소원의 심판은 판결 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 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헌법소원의 심판청 구서에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 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를 받았 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 고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 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 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에는 해당 판결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제72조(사전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	---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u>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u> 2. ~ 4. (생략) ④ ~ ⑥ (생략)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생략)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u>	③ ----- ----- ----- ----- ----- ----- 1. ----- ----- ----- -----<u>심판 청구한 경우로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지 않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는</u>----- ----- 2. ~ 4.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68조제1항에</u>-----<u>헌법소</u>
---	--

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신 설>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생략)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

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재판의-----

3.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제75조(인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⑤ 헌법재판소가-----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u>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u> ⑦ <u>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u> ⑧ <u>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u> <u><신 설></u> <u><신 설></u>	<u>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u> ⑦ <u>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u> ⑧ <u>제68조제2항에-----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u> ⑨ <u>제4항에 따른 환송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⑩ <u>제8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u>
--	--